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2022. 1. 20(목)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중앙회



목 차



[현장건의]

1. 원자재 공급 대기업의 공급갑질에 대한 시지남용 제재	1
2.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2
3.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3
4.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4
5.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담합 적용에서 제외	6
6. 공정거래법 미적용 대상의 조합의 세부기준 마련	7
7.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구조 개선	8
8. 기술탈취근절을 위한 손해액 기준 배상한도 강화	9
9.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신중 검토	11
10.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개시 의무화 반대	13
11.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15

[서면건의]

12.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에 대한 규정 명확화	16
13.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내용에 하도급법 위반내용 포함	17
14.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	18
15. 불합리한 별점제도 개선	19
16.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입증책임 분담	20
17. 사내하청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	21
18.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적용 배제 ...	22
19.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제도 개선	24
20.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25

□ 현황 및 문제점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중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유형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 이는 제품(용역)의 최종소비자 뿐만 아니라 기업 간 거래에서도 큰 폐해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원자재 생산 대기업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통보로 중소기업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
 - * 철강 공급 관련 포스코의 일방적·급격한 철강가격 상승 통보, 플라스틱원료 공급 관련 석유화학(한화, LG, SK)의 사후정산가격 상승 통보 등
 - 협상력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소수 대기업과의 관계 악화시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신고조차 불가능
- 더불어 일부업종에서는 상품판매시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사후정산하는 관행*도 만연해있어 중소기업 경영 애로 발생
 - 공정위, 산업별·상품별 거래구조 및 특성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일률적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사후정산 방식은 가격 협상조차도 불가능해 공급대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써 거래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 석유관련 제품 공급시 유가 변동을 핑계로 공급시가 아니라 공급 후 매월말에 공급사가 유리한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납부 강요

□ 건의사항

- 원자재 공급 대기업의 공급가격 책정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 유형에 사후정산 행위도 추가
 - 모든 업종에 대한 일률적 규제 불가능시 업계 현황 조사를 통한 일부 업종에라도 우선 적용

2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팬데믹으로 국제 원재료 생산량 감소 및 수출·수입 애로로 2021년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가격 급등 상황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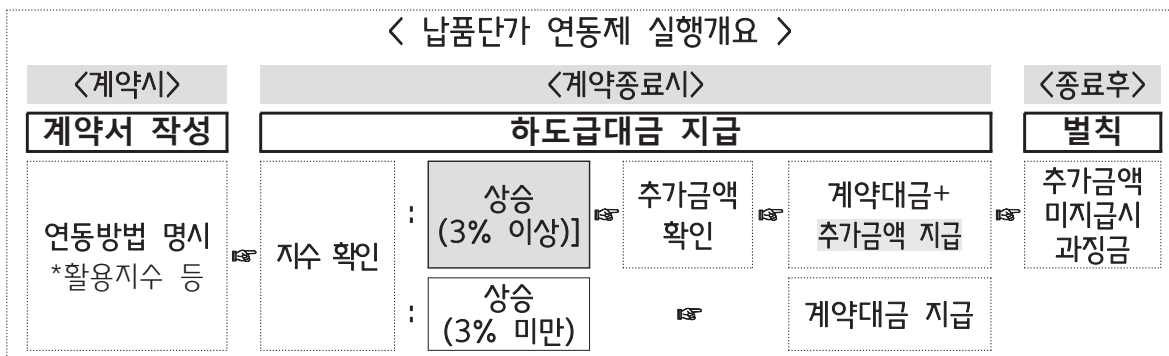
* 원자재 가격 변동 현황(산업통상자원부) *21년 연말 기준

구 분	변동폭			비고
	52주 최고가	52주 최저가	변동율	
철광석	237.6\$ ('21.5월)	87.3\$ ('21.11월)	172.2%	역대 최고가
펄프	925.0\$('21.5월)	595.0\$ ('21.1월)	55.5%	역대 최고가
원유(나프타)	789.6\$ ('21.10월)	508.5\$ ('21.1월)	55.3%	

-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과 납품을 받는 대기업 사이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
 -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운영 중이나,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조정신청이 쉽지 않고 원사업자의 인상분 반영 의무도 없어 제도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
 - * 중소기업의 59.7%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미반영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 별도의 요청이나 조정협의 없이 납품단가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

□ 건의사항

-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을 경우 대금지급시 상승분을 같이 지급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당사자 간 자율로 정한 원자재 기준가격이 법정 상승률 이상 상승시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토록 의무화



*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하도급법, 상생협력법)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법」에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하고, 협의 주체 확대 등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 (’09.4월) 납품대금조정협의제 도입, (’13.4월)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등
 -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12.9)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에 추가되어 제도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 다만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이는 작년 (’21. 4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로 제도 활용은 미비한 수준
 - 조정협의를 위한 절차, 요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인상요청도 쉽지 않아 제도 활성화에 한계
 - * 원재료비(10%↑ 상승), 노무비(최저임금인상률↑ 상승), 잔여경비(3%↑)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통 인식 >

- ① **(엄격한 요건)** 신청요건 까다롭고, 가격인상분에 대한 증빙 어려움
→ 계약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 10% 이상 상승 등
 - ② **(거래단절 우려)**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신청을 해야만 협의가 가능
→ 소위 ‘신청기업’으로 낙인될 것이 두려워 신청 자체에 부담

- 이에 「상생협력법」상 한계점으로 작용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여 「하도급법」상 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건의사항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청요건 완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진행절차) 이사회 및 총회 의결절차 삭제 * 상생법 : 삭제 반영(’21.4월)
 - (신청요건) 계약금 10% 이상 차지하는 특정 원재료값 10%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 요건 완화 * 업종별 특성 반영 또는 폐지 검토

4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일률적으로 2배 상향되어 기업의 부담 가중
 - 과거 중소기업의 경우 공정위가 재량을 통해 과징금을 50%까지 감면해준 것과 비교해 재량권이 사라지고 부과비율도 2배가 상향되어 과징금 부과비율은 4배 상승한 것으로 체감
 - 실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현황 분석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됨으로써 법의 억지력이 중소기업에게는 과다하게, 대기업에게는 과소하게 적용되어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훨씬 큰 상황

< 부당 공동행위 관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부과 과징금						
			최초	1차 조정 (정량)	2차 조정 (정성)	최종			
						금액	감경률 (1차대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대비
大	3,950,370	202,704	350	374	296	282	24.6	0.01	0.1
中企	14,952	699	83	83	71	66	20.1	0.44	9.4

* 자료 : 합리적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방향 (중소기업중앙회, 2020)

- 공정위, 관련고시를 개정('21.12.23)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의 30~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경기·기후·정치요인 등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중의 하나일 뿐이며 공정위의 재량에 맡겨져 실제 감경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 더불어 공정위는 매출액에 사업규모가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의 금액의 크기 그 자체보다는 실제 부과비율과 매출액·영업이익을 비교한 비율이 중요하며 이러한 비율 비교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은 명백한 상황

□ 건의사항

- 「공정거래법」에 중소기업은 과징금 부과비율을 차등화하도록 규정
 - 중소기업이 주로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명시
 - * 세부 차등비율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 법률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p>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① (현행동일)</p>
<p>(신설)</p>	<p>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등을 고려한 회사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여야 한다.</p>
<p>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① (현행동일)</p>
<p>(신설)</p>	<p>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등을 고려한 회사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여야 한다.</p>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 그 자체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여겨져 제재 가능
 - 사업자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사업자단체를 통한 중간 매개자를 거쳐 행하여지는 행위도 일괄적으로 포함
-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협력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자 단체로써, 동 법에 근거한 다양한 공동사업 수행 중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조합원인 중소기업들의 사업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에 의거 이러한 행위도 정보교환 담합으로 치부될 가능성 다분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정보교환의 목적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기 위함도 아님을 감안하여야 하며, 더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도 고려 필요
 - * 공정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관련 공동행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이미 규율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입장이나 현재 소비자 이익침해 관련 논란으로 실제 단 1건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해 수반되는 정보교환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거래법」(제118조)에서는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가격 인상이 아닐 경우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 조합의 요건은 소규모의 사업자(소비자)의 상호부조를 위한 목적, 임의설립, 평등한 의결권, 정관에 이익배분 한도 기재 등으로 구성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표적인 협동조합의 형태로써, 「공정거래법」에서 명시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조합
 - 중소기업자의 임의 설립 및 가입·탈퇴가 가능하며, 조합원사의 평등한 의결권, 정관에 이익배분 기재 등 요건 합치
 - 다만 구성원이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 소규모의 기준이 없으며, 절대다수의 조합원사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극소수의 대기업을 특별회원으로 두고 있는 협동조합은 해당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인식
 - * 법원에서는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자가 1개라도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실제 규모는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한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필요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 22078 판결]

□ 건의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정한 조합의 요건 구체화
 -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 규정
 - 조합원사 중 일정비율 이상이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 규정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거래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 비상임위원은 다른 직업을 겸직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어렵거나, 전원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
 - * 해외경쟁당국은 의사결정 위원들을 전부 상임위원으로 두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추세
- 더불어 위촉대상은 ①공무원, ②법률, ③학계(연구계), ④기업경영·소비자보호활동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법률·학계(연구계)는 각각의 해당분야에서 유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업경영과 소비자보호활동은 전혀 다른 분야로써 하나의 분야로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
 - * (공무원) 공정거래 관련 행정, (법률) 법 해석·적용, (학계·연구계) : 학술조사·연구
 - 기업경영 시 소비자의 이해관계와 대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 상반되는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많아 현실적으로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는 영역이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기업경영·소비자보호활동 관련 위원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 * [제품크기 축소] (경영)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 vs (소비자) 제품품질 하락
[제품가격 인상] (경영)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인상 불가피 vs (소비자) 소비자 물가 상승 등

□ 건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전원(9인) 상임위원회 및 중소기업 전문가 위촉
 - 공정거래위원회 처리 사건대상자 중 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상임위원 1인을 중소기업 전문가로 위촉(중소기업계 추천)

□ 현황 및 문제점

-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더불어 기술탈취는 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로서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
 -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제값에 인수하기보다는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핵심인력과 기술을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하도급기업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의욕저하와 성장정체뿐만 아니라 폐업까지 몰리는 상황 발생
 - 그간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왔으나, 여전히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출 탈취 기업 수 : ('18년) 33개사 → ('19년) 30개사 → ('20년) 35개사
(출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 또한, 분쟁 진행 시 대기업의 보복조치, 과도한 소송비, 선진국에 비해서 낮게 책정된 법원의 손해배상액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 불가
 -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손해액 기준(3배 이내)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통제 강화 및 충분한 피해자 구제라는 제도 취지 달성이 어려움
 - 피해구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한이 있는 손해배상책임액 규정을 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으나, '21.12.30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음

* '21.08.10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도 징벌적손해배상 내용은 하도급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과 동일하게 3배 이내 부과로 규정됨

- 실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배를 적용해도 결국 $0 \times 3 = 0$ 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겪는 애로사항인 실손해액 입증 근거 마련 필요

*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하거나,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자체를 중단 하였으나 충분한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하여 폐업한 사례 등 지속 발생

□ 건의사항

○ 기술탈취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과 징벌적 손해배상한도 및 적용범위한계가 기술탈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현행 배상한도를 강화할 필요

- 현행 ‘3배 이내’ 에서 ‘3배’ 로 강화 (하도급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도록 법적권한을 인정
 - * 「가맹사업법」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권 부여)
- 최근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그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 * 공정위 입법예고(2020.9.23.),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2020.6.8.),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2020.7.3.),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2020.7.23.)

구분	현행	개정안
가맹점단체 구성	자율 설립	신고제 도입

- 개정안에 따른 신고제 도입은 '가맹점주 노조'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부작용 예상
 - 「가맹사업법」 상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효과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으로 맺어진 독립된 사업자 관계로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질 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 진행 불가능
- 또한 무분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난립으로 가맹본부의 경영 악화 우려
 - 신고제 도입 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되어 단체의 대표성이 저하되며, 단체가 지역별 혹은 상황별 특성에 따라 산발적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
 - 특히, 중소기업이 97%이고, 매출액 규모가 10억 미만이 46.9%인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을 감안할 경우, 영세한 가맹본부는 무분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으로 인해 통일된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 초래

- 더불어 가맹점에 단체교섭권 부여한 입법례 없음
- 공정위도 신고제 도입은 헌법상 단체결성의 자유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제를 1999년에 폐지

□ 건의사항

- 신고제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불가피하게 도입시에는 최소한의 요건 필요

-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갖도록 신고요건으로 최소한 전체 가맹점 사업자중 50%이상 가입 필요
- * 반드시 신고된 가맹점사업자 단체만이 가맹본부와 협의의 대상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거래조건 등에 대해 협의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권한을 인정

* 「가맹사업법」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권 부여)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2020.6.8.),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2020.7.3.),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2020.7.23.)

구분	현행	개정안
협의요구시 본사 의무	성실하게 협의	거부 금지
협의거부시 과징금 부과	없음	과징금 부과

- 현행법상 성실 협의 규정이 있음에도 협의 개시 의무 및 과징금 도입 시 사실상 합의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운용될 가능성 다분
 - 가맹본부가 점주 협의요청을 거부해 발생한 분쟁이 거의 없는데도 협의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협력해 나가는 가맹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효과

* 가맹분야 분쟁 비중 :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20%),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18%) 順 (202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반복적인 합의 요청 시 가맹본부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맹본부 경영의 자유가 훼손될 가능성 다분
- 가맹단체의 무조건적인 로열티 인하가 요구되고 강제로 합의될 경우 본부 수익 감소 및 재투자 감소를 초래해 가맹사업자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

- 사업자간 거래관계를 노사관계로 접근은 부당
 -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독립사업자들의 연합체로서 노동조합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가맹점사업자를 근로권이 보장된 근로자의 구조로 파악하여 이를 유사하게 규율하려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거래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
 - 사업자간의 거래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여 거래관계를 근로관계와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변경시키고 그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사업을 지속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

□ 건의사항

-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개시 의무화’ 개정 반대
 - 현행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의 협의를 활성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

□ 현황 및 문제점

- 대·중견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관련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법률별 과징금 부과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공정거래법	775,026	1,276,615	290,814	94,136	288,797
하도급법	4,364	9,615	11,000	26,934	39,193
대규모유통업법	23,888	3,048	1,540	2,131	51,587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20 통계연보」(’21. 6. 14.)

- 그러나 과징금은 법률위반행위를 억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어 전액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자 구제 기능 부재
 - 피해 중소기업이 개별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경영난이 가중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 환경에 있는 피해기업은 당장의 피해를 극복하기에 한계 존재

□ 건의사항

-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과징금을 활용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이수진의원안, ’21. 7. 1.)

-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피해기업 구제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금 설치·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안, ’20. 12. 3.)

-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피해기업 구제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편입시켜 운용

□ 현황 및 문제점

-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다양한 의무 및 규제 관련 핵심주체는 “동일인”이며 통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소유 혹은 지배하고 있는 주체로 이해
 - 매년 5월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때 “동일인”도 함께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동일인”은 「공정거래법」 운영을 통한 공정경제 구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주체
- “동일인” 지정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와 지배구조에 대한 범위가 달라지고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사업영역에 대한 규제도 달라짐에 따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동일인” 지정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상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주요 주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용어에 대해 제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나 “동일인”에 대한 정의는 법, 시행령 등 어느 규정에서도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혼란 초래
 - 재벌가 2세의 경영권 다툼 등이 발생할시 “동일인”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며, 공정위가 “동일인”을 지정할 시 재벌그룹의 공식 후계자(승계인)로 인정받는 결과로 작용

□ 건의사항

-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명확한 법 집행기준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위,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여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선정하고 해당 집단에게는 다양한 공시의무 부과
 - * 기업 일반, 주식소유, 계열회사,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의결권 행사 등
- 2021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에 대한 내용도 공시 필요(지급수단, 금액, 기간 등)
 -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계약에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함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 하도급대금 수취기일 : (1차) 30.7일 → (2차) 36.7일 → (3차) 40.8일

* 현금결제 비율 : (1차) 70.8% → (2차) 67.4% → (3차) 63.3%

[자료 : 김병욱 의원실(더불어민주당)]

- 공시제도가 그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소유·지배구조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것에서 나아가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기능도 부여되는 효과
 - 다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금 결제조건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가능하나 원사업자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는 하위 협력사에서 확인이 어려워 하위 협력사 간 거래 환경개선에 한계 존재
 - *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차 협력사도 2차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거나 원사업자가 대금을 법정기일(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1차 협력사도 2차 협력사에게 대금 기일을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2차 협력사는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

□ 건의사항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에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제재조치 관련 사항 추가(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 * 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부당 대금결정 등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거래법」 상 공동행위가 거래조건의 합리화 및 개선을 위해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 미적용
 - 법 개정을 통해 6가지의 요건을 4가지*로 재정비하였으며, 내용상의 큰 변화보다는 중첩되는 내용을 통합하여 개정
 - * ①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②연구·기술개발 ③거래조건의 합리화 ④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 그러나 인가를 위해서는 각 사업자의 재무제표, 증빙서류, 결의서 등 준비서류가 많으며, 인가에 따른 심의기간(30일) 소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여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
 - * 그간 인가사례는 단 2건에 불과(속초시 젓갈협회, 레미콘 조합의 공동연구개발)
-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대기업의 공동행위와 같이 시장지배력 강화나 경쟁자 배제를 위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공동대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 특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조건의 합리화 및 개선” 은 사실상 대기업과의 협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공동대응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여겨져 동 규정을 활용하지 못해 대기업과의 협상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 중소기업의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는 인가에서 신고로 전환
 -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협상, 원재료 공동구매 협상 등에 활용

□ 현황 및 문제점

- 「하도급법」에 의거 범위반 사업자는 시정조치와 더불어 벌점부과 및 벌점 누산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 시행 중
 - 벌점 5점 초과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10점 초과시 영업정지 조치 시행(「건설산업기본법」 근거)

*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 벌점(「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구분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벌점(점)	0.5	1.0	2.0	2.5	3.0

- 벌점제도는 향후 범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 제고 및 법의 억지력 확보의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어 이미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효과나 피해기업 지원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또한 사업자 간 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한 불이익이 타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의해 규율받고 있는 공공조달 계약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개연성에 대해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제재조치는 주로 중소기업이 대상

* 2020년 기준 공공부문 구매액의 79.8%를 중소기업이 차지(중소벤처기업부 자료)

- 더불어 영업정지 처분도 일부 업종(건설업)에만 내려지고 있어 벌점제도의 실질적인 운영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 통한 개선방안 마련
 - 벌점 누산에 따른 공공조달입찰 참여제한 제재조치 폐지
 - 영업정지 조치 대상에 하도급거래가 빈번한 업종 추가 검토 등

□ 현황 및 문제점

-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이나 여전히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대기업은 계약 체결 전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계약체결 실패 및 계약 후 거래 단절 우려 등의 이유로 거절이 불가능

* 최근 5년간('16~'21)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공정위) : 14건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피해기업수	51	59	52	52	32	246
총 피해금액(억원)	1,270	902	1,097	1,022	1,119	5,410

- 2021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기반 마련
 - 기술자료 정의규정 완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자료제출 명령 및 계약 체결 전 기술유용행위 방지 등 제도 개선 성과
- 그러나 하도급거래 중 기술탈취 경험시 신고, 소송 등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인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수급사업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
 - 수위탁거래시에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기술탈취를 한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분담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2017)

- 기술탈취시 법적 대응 하지 않는 이유(복수) : 입증 어려움(66.6%), 거래관계 유지(53.3%)

□ 건의사항

-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 중 기술탈취를 한 원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미입증시 수급사업자의 주장 인정)

□ 현황 및 문제점

-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철강업계 원·하청 간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원청 위주의 시장 독점적 산업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여전히 원·하청 간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

* 철강업 종사자수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는 철강업 전체의 0.6%에 불과하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체의 60% 차지
(자료 : 포스코-사내하청업체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용역(21), 중기중앙회)

- 원·하청기업은 별개의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업체에 퇴직자를 파견해 하청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 행사하여 자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환경 조성
 - 최근 원청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이유로 원청 자회사 근로자를 사내하청업체의 ‘안전이사*’로 파견해 하청업체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책임 의무도 하청업체에 전가
 - * 안전이사제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법 이슈에 따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포스코가 사내하청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제도(포스코-사내하청업체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용역, 중소기업중앙회)
 -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명목으로 사내하청업체의 인건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해 하청업체 1인당 업무량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등 악순환 발생
- 따라서 원·하청 수직 구조 下 하청업체는 자체적 생산성 향상 및 역량 개발 여력이 부족해짐으로써 산업 경쟁력 하락

□ 건의사항

- 원·하청업체간 거래관행 분석을 통한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마련
 - 거래 특수성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적, 물적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 공동 구·판매, 공동브랜드 등 공동사업* 수행
 - * 원가절감, 신상품 개발·혁신,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시장경쟁 촉진
- 이처럼 협동조합의 본질은 협업·공동사업 추진이나 공정거래 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식되어 자유로운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배제 근거가 마련
 -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 단서와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 거래 상대방이 대기업인 경우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법 적용 및 해석에 혼란 발생
 - 이에 협동조합이 하도급, 수·위탁 거래 시에도, 일률적인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단서 적용으로 인해 제값받기를 도모할 수 없는 상황
 - * '협동조합 조합원사 원자재 가격변동 및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본회, '21.8) 관련, 공급원가 상승분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 중소기업은 '6.2%'에 불과(일부반영 47.9%, 전혀 반영못함 45.8%)
- 이에, 당초 법 개정 취지 및 입법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간 협업 촉진 및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과 대기업 등 B2B간 거래에 대해 공동행위 허용 확대 필요

□ 건의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지원
 -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단서 관련 소비자 범위 명확화 및 하도급·수위탁 거래 시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 *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21.6.22)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위, 「하도급법」 제25조의4에 의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명단을 공표 중
 - 3년간 경고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공표대상
 - * 사업자명, 대표자, 업종, 위반횟수, 벌점, 기업규모를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거래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법 위반 내용에 대한 사항은 공표내용에 미포함
 - 법을 자주 위반하는 원사업자라는 사실도 중요하나, 위반한 내용이 공표가 되어야 거래중이거나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수급사업자가 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대비가 가능
- 더불어 명단공표는 보도자료 배포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 1년간 공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표기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공표 후 경각심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도 있으나, 공표 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도 존재
 - * 상습 위반사업자의 41%가 명단 공표 후 또다시 법 위반(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더불어 홈페이지 게시와 더불어 보도자료로 배포됨에 따라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를 하더라도 관련 기사는 삭제가 불가능해 과거 명단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등 1년간 게시하는 의미가 퇴색

□ 건의사항

- 상습범위반사업자 명단 공표시 주요 범위반 내용도 함께 공표
- 상습범위반사업자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지속 게시

□ 현황 및 문제점

- 비대면 시장 확대에 따른 플랫폼 간 경쟁도 치열해짐에 따라, 제품 가격 유지, 판촉 경쟁, 배송비 등 부담으로 수익성이 매출을 따라가지 못하자 경쟁에 따른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

* 우아한형제들, 판매촉진비 소요 ('18) 91억원 → ('19) 966억원

** 무신사,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51% 성장했으나, 영업이익은 7% 감소

-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에는 플랫폼 자사 광고와 시장 내 경쟁, 추가 사업 확장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까지 포함

< 플랫폼 유형별 평균 수수료율 현황 >

패션플랫폼	온라인 증개플랫폼	백화점(오프라인)
평균 26.7% * 수수료 30% 계약이 최다 (응답업체 중 52.0%)	· 오픈마켓 : 최대 12.5% · 배달앱 : 최대 12.5% · 숙박앱 : 약 10.0%	평균 29.2%

* 자료 : 패션플랫폼,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입점업체 애로실태조사(본회, 2021)

- 최근 3년간 플랫폼 입점업체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90.3%가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책정을 지적함

* 자료 :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본회, 2021.4.)

- 입점업체의 제품 판매에 필요한 기본수수료 수준 및 상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본 수수료 외에 추가비용이 없도록 규모별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함

* 홈쇼핑(홈앤쇼핑) 수수료 : 대기업은 정률수수료 + 정액수수료(특약) 계약을 체결하나, 중소기업은 정액수수료(특약) 면제

◆ 사례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 '12년 여전법 개정,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 수수료율 반영

-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 '12년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은 총 5차례 인하

* 적격비용 산정 시 카드사의 최근 3년간 자금조달·위험관리·마케팅 비용 등 종합 고려

- 영세·중소가맹점은 적격비용 미만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 시행

* 우대가맹점 : (3억원 이하) 0.5%, (3~5억원) 1.1%, (5~10억원) 1.25%, (10~30억원) 1.5%
 일반가맹점 : (30~100억원) 평균 1.9%, (100~500억원) 평균 1.95%

- 또한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수수료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규제 조치가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플랫폼 비용 관련 애로 >

- | |
|---|
| ① [수수료 적정성] (20년) 부담 66.1%, 적정 13.0% → (21년) 부담 71.3%, 적정 9.2% |
| ② [광고비 적정성] (20년) 부담 66.0%, 적정 10.0% → (21년) 부담 69.9%, 적정 10.2% |
| ③ [부당행위 경험] (20년) 있음 47.1%, 없음 52.9% → (21년) 있음 53.4%, 없음 46.6% |
| ④ [불만족 사유] 수수료 정책 67.9%, 정산 절차 19.2%, 계약 조건 13.3% |

* 자료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2021.12)

- 민간 계약 관계인만큼 수수료 수준을 직접 규제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할 필요

□ 건의사항

-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 입점업체 규모별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중소기업은 입점플랫폼 평균 수수료율의 80%를 상한으로 적용
 - 취급품목 및 플랫폼 유형에 따라 플랫폼 유형별 적정 수수료율 도출,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 제정법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와 ‘판매대금 정산방식, 대금지급 시기 및 절차’ 는 포함